

서울특별시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1
----------	------

제안년월일 : 2018년 9월 7일
제안자 : 기획경제위원장

1. 수정이유

- 협력업체를 서울시에 소재한 업체로 한정하여 지원대상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조문 간의 체계성 강화를 위하여 입법형식에 맞지 않거나 적합하지 않은 부분들을 정비하고자 함.

2. 수정의 주요 내용

- 가. 협력업체의 범위를 서울시에 소재한 업체로 규정함(안 제2조 제2호).
- 나. 입주기업을 현지기업 등으로 변경함(안 제5조 제1항).

서울특별시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조의 “서울시”를 “서울특별시”로 한다.

안 제2조제2호의 “협력업체”를 “시에 소재한 협력업체”로 한다.

안 제5조제1항의 “입주기업”을 “현지기업 등”으로 하고 제5조제2항의 “제1항의 종합계획”을 “종합계획”으로 한다.

안 제6조의 “제6조(실태조사)①”를 “제6조(실태조사) ①”로 한다.

안 제9조의 “제9조(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등의 경영정상화 지원)”을 “제9조(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등의 경영정상화 지원) ①”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제정안	수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성공업지구에 입주하고 있는 <u>서울시</u> 기업의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평화적 남북 교류·협력을 증진하여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성공업지구에 입주하고 있는 <u>서울특별시</u> 기업의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평화적 남북 교류·협력을 증진하여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등”이란 본사나 공장이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기업의 사업자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의 수리를 받아 개성공업지구에 설립한 현지기업(지사·영업소·사무소를 포함한다)과 그 기업이 생산하는 물품과 관련하여 장비나 부품 등을 공급하는 <u>협력업체</u> 를 말한다. 3. (생략)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정안과 같음) 2.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등”이란 본사나 공장이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기업의 사업자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의 수리를 받아 개성공업지구에 설립한 현지기업(지사·영업소·사무소를 포함한다)과 그 기업이 생산하는 물품과 관련하여 장비나 부품 등을 공급하는 <u>시에 소재한 협력업체</u> 를 말한다. 3. (제정안과 같음)
제5조(종합계획 수립) ① 시장은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등의 경제활동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서울특별시 개성공업지구 <u>입주</u>	제5조(종합계획 수립) ① 시장은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등의 경제활동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서울특별시 개성공업지구 <u>현지기업</u>

<p><u>기업</u>의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p> <p>② <u>제1항의 종합계획</u>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p>1. ~ 6. (생략)</p>	<p><u>등</u>의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p> <p>② <u>종합계획</u>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p>1. ~ 6. (제정안과 같음)</p>
<p>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등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등의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p> <p>② (생략)</p>	<p>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등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등의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p> <p>② (제정안과 같음)</p>
<p>제9조(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등의 경영정상화 지원) 시장은 남북 당국의 조치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등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p> <p>1. ~ 2. (생략)</p> <p>② (생략)</p>	<p>제9조(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등의 경영정상화 지원) ① 시장은 남북 당국의 조치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등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p> <p>1. ~ 2. (제정안과 같음)</p> <p>② (제정안과 같음)</p>

서울특별시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성공업지구에 입주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기업의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평화적 남북 교류·협력을 증진하여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성공업지구”란 남한과 북한 사이의 합의에 따라서 북한의 개성지역 일대에서 개발·구성된 공업지구를 말한다.
2.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등”이란 본사나 공장이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기업의 사업자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의 수리를 받아 개성공업지구에 설립한 현지기업(지사·영업소·사무소를 포함한다)과 그 기업이 생산하는 물품과 관련하여 장비나 부품 등을 공급하는 시에 소재한 협력업체를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시가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한 지방공사·지방공단이나 출자·출연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등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등의 경제활동을 촉진 및 지원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종합계획 수립) ① 시장은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등의 경제활동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서울특별시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등의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등의 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한 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2.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등에 대한 경영·인력·정보·기술 지원 등에 관한 사항
3.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등의 물류 및 유통 지원에 관한 사항
4.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등의 국내·외 마케팅 및 상설판매 전시지원에 관한 사항
5.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등의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등의 육성과 활동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등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등의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이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협의회 설치) ① 시장은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등의 활동 촉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등 지원협의회(이하 “지원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지원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1.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등의 활성화 촉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지원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행정1부시장이 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기업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실·국장 중 1명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의원
2.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인 대표
3. 개성공업지구를 지원하는 공공기관 대표
4. 남북한 교류관련 전문가 또는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지원협의회는 제2항에 따른 안건이 발생하였을 때 구성하며, 안건의 자문이 끝날 때까지 존속한다.

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협의회의 운영과 관련해서는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등에 대한 지원) 시장과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등을 지원하도록 노력한다.

1. 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기업지원 사업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계약
3. 그 밖에 시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기업관련 시책 참여

제9조(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등의 경영정상화 지원) ① 시장은 남북 당국의 조치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등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대부분의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등의 통행이 1개월 이상 계속하여 차단된 경우
2. 근로자 조업 중단, 물류 운송 중단 등으로 인하여 대부분의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등의 생산 활동이 1개월 이상 불가능하게 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의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등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기업유치) 시장은 시 외의 지역에 소재한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등의 본사를 시로 이전·유치하기 위하여, 시내 전세·판매·물류단지 입주 등 기회 제공을 통하여 기업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개성공단 현지기업 등 명부 작성 및 홍보·지도) ① 시장은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등의 명부를 작성하여 지원업무에 활용하도록 한다.

② 시장은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등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시내 자치구 및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홍보 및 지도한다.

제12조(위탁) ① 시장은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를 기업지원 관련 단체나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